

## 통상산업부공고 제1995-94호

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 
공업발전기금 운용·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 
공고합니다.

1995년 7월 8일

통상산업부장관

### '95 공업발전기금 운용·관리 요령중 개정요령

#### II. 부문별 융자대상 및 취급기관

##### 1. 시제품 개발사업

『가. 융자대상의 본문』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호의  
『2)~10)』을 『3)~11)』로 한다.

##### 가. 융자대상

다음 각호의 시제품, 소재, 신기술, 제품디자인,  
자원절약기술 및 환경오염방지기술 등을  
개발하려는 사업자 등

『각 호 2)』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』

##### 2) 통상산업부장관이 자본산업육성과 관련 고시 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

라. 취급기관중 1)『기계부문』을 『기계·일반소재부  
분』으로 하고, 『5)일반소재 부문:한국생산성본부』  
를 삭제하며 『6)』을 『5)』로 한다.

##### 2.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중

『가. 융자대상: 다음 각호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  
려는 기업』을 『가. 융자대상: 다음 각호의 첨단산업  
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자』로 한다.

#### III. 융자조건

1. 시제품 개발 및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중 과제당  
한도액란의 『시제품: 5억원이내(공동개발사업  
: 8억원 이내)』를 『시제품: 20억원이내(통상산

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소요  
금액)』로 한다.

#### IV. 신청·선정 및 의무사항

1. 지원신청중 『다. 융자취급은행』을 다음과 같이  
한다.

##### 다. 취급은행

공업발전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 
금관리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(이하  
'관리은행'이라 한다)과 공업발전기금의 대여 및  
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, 장기  
신용은행, 중소기업은행, 시중은행, 지방은행

『4. 취급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장 의무사항』을  
삭제한다.

#### V. 『기금운용·관리기관 의무사항』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# 가. 관리은행 의무사항

○ 관리은행이 공업발전기금을 관리할 때에는  
'공업발전기금'의 명의로 수행하고 기금의 대  
여 및 회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예탁금  
과 일반자금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.

○ 관리은행은 취급은행으로부터 기금대여 요청  
이 있는 때에는 예치된 공업발전기금 범위내  
에서 차용증서등 대여 관련서류를 징구한 후  
10일 이내에 대여하여야 한다.

○ 관리은행이 기금을 대여 및 회수할 때에는  
자기 책임하에 운영·관리 하여야 한다.

○ 관리은행이 대여 일시·조건·절차, 이자계산의  
방법, 대여원리금의 회수, 대출조건 등 자금  
의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취급은행  
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약정내용에 관하여  
통상산업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○ 관리은행은 공업발전기금 업무운용규정(이  
하, '규정'이라 한다) 제28조 제3항에서 정하  
는 내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통상  
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나. 취급기관의 장 의무사항

- 1) 취급기관의 장은 기금사용자가 용자자금을 당초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개발계획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금의 용자를 취소 또는 중단하고 용자 취소일 또는 중단일, 적용일자, 회수기한 등을 정하여 용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자금을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2) 취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취급은행의 장 의무사항

- 1) 취급은행의 장은 나. 항의 회수요청에 따라 대출일 또는 개발중단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동안 해당은행 시설자금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.
- 2) 취급은행의 장은 규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내용의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관리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통상산업부고시 제1995-61호

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발전기금 업무운용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5년 7월 8일

통상산업부장관

공업발전기금 업무운용 규정중 개정규정

제3조(용어의 정의)에 제1-1호를 다음과 같이 신

설하고, 제2호중 『통상산업부장관과 약정서』를 『관리은행과 약정서』로 하고, 제5호중 『대여라 함은 통상 산업부장관』을 『대여라 함은 관리은행』으로 한다.

1-1 관리은행

공업발전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위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.

제14조중 각호의 1. 운전자금과 2. 시설자금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운전자금

기술개발사업자금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자금(다만, 단일시설재 또는 연구개발용 기자재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시설자금으로 분류한다)

2. 시설자금

생산성향상 및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 사업자금

제17조 제1항중 『용자사업자를 확정하고 취급기관에 통보』를 『용자사업자를 확정하고 관리은행 및 취급기관에 통보』로 한다.

제26조중 『취급기관의 장 또는 취급은행의 장』을 『관리은행장, 취급기관의 장 또는 취급은행의 장』으로 한다.

제2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관리은행장은 제2항의 보고내용을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취합하여 해당분기 종료후 익월 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